

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▶ 상품명 :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
- ▶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계약으로 적립받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- 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(2025.06.01 현재, 단위 : 연, 세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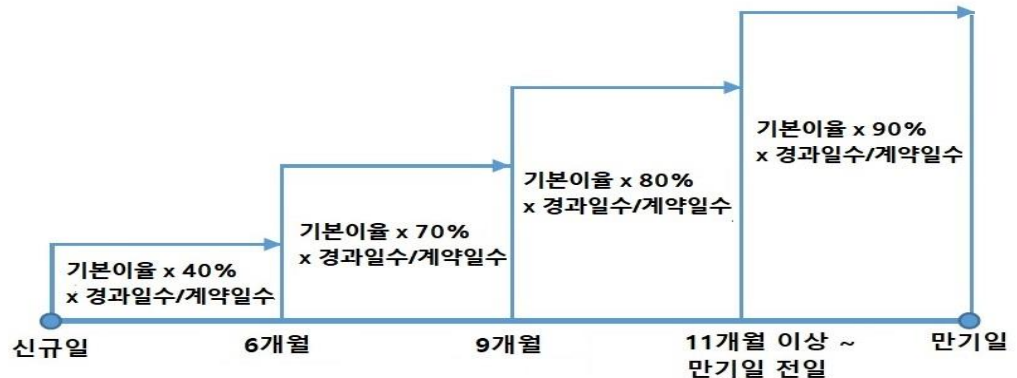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										
가입대상	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										
상품유형	■ 정기예금										
가입금액	■ 1 원 이상										
계약기간	■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6개월 ~ 60개월 (연, 월, 일 단위) ■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6개월 ~ 60개월 (연, 월, 일 단위)										
거래방법	■ 신규 : 영업점, 인터넷뱅킹 ■ 해지 : 영업점, 인터넷뱅킹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■ 만기일시지급식 (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) ■ 자동재예치 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										
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	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										
기본이율	<table><tr><th>가입기간</th><th>기본이율</th></tr><tr><td>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</td><td>연 1.80%</td></tr><tr><td>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</td><td>연 1.95%</td></tr><tr><td>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</td><td>연 1.60%</td></tr><tr><td>36개월 이상</td><td>연 1.60%</td></tr></table>	가입기간	기본이율	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연 1.80%	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	연 1.95%	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	연 1.60%	36개월 이상	연 1.60%
가입기간	기본이율										
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연 1.80%										
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	연 1.95%										
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	연 1.60%										
36개월 이상	연 1.60%										
만기이자 산출근거	■ 신규일부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[월 단위 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개월수/12 (1년제 기준)										

-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산식에 의거 산출된 이자를 지급합니다.
-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(단, 최저이율은 0.01%)
-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에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에금이 유리할 수 있음

예치기간	중도해지이율 (디폴트옵선행 퇴직연금 정기에금)
6개월 미만	약정이율* x 9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 (*약정이율 : 퇴직연금 정기에금 공시금리)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	
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	
11개월 이상 ~ 만기일 전일	
예치기간	중도해지이율 (일반 퇴직연금 정기에금)
6개월 미만	기본이율 x 4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6개월 이상 ~ 9개월 미만	기본이율 x 7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9개월 이상 ~ 11개월 미만	기본이율 x 8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11개월 이상 ~ 만기일 전일	기본이율 x 90% x 경과일수/계약일수

(중도해지 이율 계산(일반 퇴직연금 경우)예시)

중도해지이율
및
산출근거



※ 위 그림은 적용율, 중도해지개월수, 계약일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.

- 중도해지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됩니다(나머지 절사)
- 중도해지금액은 원단위까지 적용됩니다(나머지 절사)
- (디폴트옵선행 한정)위 내용에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아래의
 - (1)~(10)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예금주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**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**
 - 단,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, (11) 및 (12)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율(가산금리 포함)을 적용합니다.
 - (1) 가입자의 퇴직급여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- (2)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(3)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. 단,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
 - (4)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


	(5)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(6)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(7)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(8)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. 단,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(9)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(10)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(11)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 시 (12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 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■ 이 예금의 만기 이전에 특별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을 의미합니다. 1. 1년 미만 : 이 예금의 6개월제 약정이율 2. 1년 이상 ~ 2년 미만 :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율 3. 2년 이상 ~ 3년 미만 : 이 예금의 2년제 약정이율 4. 3년 이상 ~ 4년 미만 : 이 예금의 3년제 약정이율 5. 4년 이상 ~ 5년 미만 : 이 예금의 4년제 약정이율 6. 5년 : 이 예금의 5년제 약정이율
만기후 이율 및 산출근거	■ 만기후 1년 이내 : 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기본이율의 1/2 ■ 만기후 1년 초과 : 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기본이율의 1/5
연계·제휴 서비스 내용	■ 해당사항 없음
무통장거래	■ 이 예금은 통장발행이 불가합니다.
계약의 해지	■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금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·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합니다. ■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(단,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)
휴면예금 및 출연	■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■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위법계약해지권	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 시에는

	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❑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(해당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	
양도	❑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합니다.		
질권설정	❑ 이 예금의 질권설정은 불가합니다.		
자료열람요구권	❑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※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❑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
재예치	가 능	❑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– 이 예금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당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됩니다. – 사용자가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되지 않으며, 별도 의사 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. ❑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· 개인형 퇴직연금 (IRP) –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 조 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–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 ❑ 재예치 기준일 – 이 예금의 만기일을 재예치일로 하고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을 재예치일로 하며, 만기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	

분할인출	가 능	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의 적립금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 ■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 1.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.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■ 만기일전에 분할해지를 하는 경우 분할해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.
세제혜택	불 가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
예금자보호여부	해 당 (DC/IRP)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	비해당 (DB)	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3 유의 사항

- ▶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부산은행 고객센터(1588-62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busanbank.co.kr)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금리변동형 정기에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고정금리	변동금리
운용형태		
특 징	■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	■ 일정주기(3,6개월 등)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
장 점	■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	■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
단 점	■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	■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

※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내 용
-----	-----
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
문의사항 및 민원상담	영업점	당행 홈페이지 '영업점 찾기' 참조	
	고객센터	1544-6200/1588-6200	
	인터넷 홈페이지	www.busanbank.co.kr	
분쟁조정	금융감독원	국번없이 1332	
	e-금융민원센터	www.fcsc.kr	
상품 개발부서	기업고객부	051-620-3321	